

2018 울산광역시 복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

일 시	2018. 11. 27.(화) 15:00~16:00		회의장소	3층 상황실
참석인원	재적	참석	불참	비고
	10	9	1	
안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제7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			
심의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019년, 2020년 : 동결(2018년 월정수당 지급액) ◦ 2021년, 2022년 : 인상(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) 			
사회자	<위촉장 수여, 구청장님 인사말씀, 회의 안내>			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회의에 앞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◦ 위원장으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			
○○○위원	◦ 저는 ○○○ 위원님을 추천합니다.			
사회자	◦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?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?			
	< 위원 전원 동의 >			
사회자	◦ 그럼 ○○○ 위원님이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.			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네....감사합니다....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. ◦ 이어서 기획홍보실장님,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			
	< 회의 자료 설명 >			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원님들의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◦ 이와 관련해서 우선,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. 			
○○○위원	◦ 9페이지, 결정절차를 살펴보면, 심의위원회는 4년마다 1회 구성이 되어있는데, 4년에 1회만 구성되어 결정한다면, 결정과정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?			
사회자	◦ 2014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, 2015년 ~2018년(총 4년)의 연도별 기준을 결정하였듯이, 오늘 회의를 통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.			
○○○위원	◦ 복구의회 인원수라던지, 지급액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?			
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참고자료 1”을 보시면 됩니다. 현재 북구의회 의원은 8명이며, 2018년 기준 의정비는 연 총 4,00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, 월정수당 연 2,689만원, 의정활동비는 연 1,320만원입니다.
기획홍보실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,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있고, 오늘 심의회 회의에서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하시면 됩니다.
○○○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원 활동 현황은 어떤 형식입니까? 상근직인지, 아니면 파트타임인지 궁금합니다. 생업이 있고,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?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근직은 아니고, 의회일정에 따라 임시회 및 정례회기간 동안 활동하며, 평시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과 지역 주민들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겸직이 가능하긴 하지만,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.
기획홍보실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창기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을 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된 것이 맞습니다. 일부 의원들이 기존 기업체(회사)로부터 월급을 수령하는 등 의원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, 지방자치법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여 일률적으로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.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남구와 동구 결정현황을 보니, 2019년과 2020년은 동결, 2021년과 2022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맞습니까?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네! 그렇습니다.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, 자유롭게 개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○○○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구의회 의원들을 살펴보면, 초선 의원들이 많고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. 다만,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시민들의 정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,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2년(2019년, 2020년)은 동결하고, 그 이후 2년(2021년, 2022년)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지켜보면서 인상을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내봅니다.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?
○○○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의원 의정비 지급액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, 저도 2년은 동결하고 그 후 2년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사회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참고로 말씀드리면, 2019년은 확정금액으로 결정하게 되고,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고, 지급액을 결정하는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.

위원장	◦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!
○○○위원	◦ 그 어느 때보다 울산 경기가 최악의 상태입니다.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○○○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.
○○○위원	◦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◦ 참고자료를 살펴보니, 울산 내 타 구·군과 비교해봤을 때, 북구가 많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◦ 그렇지만, 요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2년 동결, 2년 인상하는 방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.
위원장	◦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, ○○○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말씀에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. ◦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!
○○○위원	◦ 회의자료를 살펴보면, 중구, 남구, 울주군은 지난 4년동안 꾸준히 인상을 해왔고, 북구는 2년 인상, 2년 동결을 하였습니다. ◦ 형평성을 따지고보면, 북구도 인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이지만, 지금 가장 큰 이슈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. ◦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, 월정수당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수준 정도 현실성 있는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.
위원장	◦ 기본적으로는 먼저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.
○○○위원	◦ 네! 그렇습니다.
○○○위원	◦ 주민들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 및 눈높이를 맞추어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, ○○○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.
○○○위원	◦ 현재 8명 의원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, 현실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○○○위원	◦ 저도 의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
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결론을 위하여 토론과 표결이 필요할 수 있지만, 가능하면 통일된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◦ 그럼, 2019년, 2020년(2년) 동결하고, 이후 2년(2021년, 2022년)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안을 갖고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	<9명 중 9명 찬성>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좋습니다. 그럼 재적위원 10명 중 9명의 찬성으로 2019년, 2020년(2년)은 동결하고, 이후 2년(2021년, 2022년)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.
	<의사봉 3타>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이것으로 2018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	<의사봉 3타>
위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